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연월일 : 2006. 8. 2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함(안 제2조)
- 나.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 연임가능 함(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6조)
- 바. 본청 및 각급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 집행 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토록 함(안 제7조)
- 사.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

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 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요청 등)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반영) 교육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